

수급자(어르신) 인권보장

제70조(수급자 인권) 센터의 수급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

제71조(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수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급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2조(인권침해호소경로) 수급자의 의견이나 불편을 수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공식적 절차를 마련한다.

- ① 수급자가 인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여겨질 때 수급자나 보호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의견은 구두나, 서면으로 직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③ 인권침해 사항이 접수될 시 즉각 지체 없이 이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센터장은 수급자나 보호자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센터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⑤ 인권침해로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한다.

제73조(서약서) 모든 직원은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하는 행위, 안전사고예방, 기타수급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금지행위) 수급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한다.

- ① 수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② 정신적, 정서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③ 성적 학대 행위
- ④ 방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 ⑤ 기타 수급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75조(처벌) 직원에 의해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보고가 되는 경우, 센터장은 즉각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다. ① 1회 - 주의, 경고

- ② 2회 - 시말서
- ③ 3회 이상 - 징계해고

④ 단 신체적인학대(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한 구타 및 폭력행위)는 단 1회라도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